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54
----------	----

발의년월일 : 96. 12. 24

제안자 : 이상은위원외 9인

1. 제안이유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과목이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 봉급등 인건비에 대한 필수경비가 부족하게 편성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분	제출예산액	예산수정		금회승인액
		삭감	증액	
계	71,022,359	40,720	40,720	71,022,359
일반행정비	22,606,559		40,720	22,647,279
사회개발비	27,397,830	40,720		27,357,110
경제개발비	18,859,845			18,859,845
민방위비	285,829			285,829
지원 및 기타경비	1,872,296			1,872,296

나. 수정 주요 상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제출예산		수정증감	수정후 기정, 경정대비	
		경정	수정		기정예산	증감
삭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429,040	388,320	△40,720	599,040	△210,720
증액	○괴정4동 공무원 정액수당	29,833	31,633	1,800	35,342	△3,709
	○당리동 공무원 정액수당	25,384	26,684	1,300	38,706	△12,022
	○감천1동 통.반장 수당	68,550	70,050	1,500	71,280	△1,230
	○구본청 직원 봉급	5,317,951	5,325,951	8,000	5,324,530	1,421
	○구본청 직원 정액수당	759,570	771,770	12,200	794,042	△22,272
	○민방위재난관리과 시간외수당	0	20,585	10,900	9,685	10,900
	○의회방송장비시설교체 시설비	0	5,020	5,020	0	5,020

3. 수정안 본문 : 96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새비목설치및삭감(증액)요구내역(별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새비목설치및삭감(증액)요구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단 체 장 제출예산액	위원회 수정액		조 정 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비 고
관	항	세 항		감액	증액			
총 계			6,640,013	40,720	40,720	6,640,013		
보건 및 생활환경	환경 관리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429,040	40,720		388,320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경정 429,040-기정 599,040 = 경정감 △170,000에서 ⇒경정 388,320-기정 599,040 = 경정감 △210,720	p139
일 반 행정비	내무 행정	사무관리 (인건비)	29,833		1,800	31,633	괴정4동 공무원 정액수당 경정 29,833-기정 35,342 = 경정감 △5,509에서 ⇒경정 31,633-기정35,342 = 경정감 △3,709	p 85
			25,384		1,300	26,684	당리동 공무원 정액수당 경정 25,384-기정 38,706 = 경정감 △13,322에서 ⇒경정 26,684-기정38,706 = 경정감 △12,022	p 85
"	"	" (보상금)	68,550		1,500	70,050	감천1동 통.반장수당 경정 68,550-기정 71,280 = 경정감 △2,730에서 ⇒경정 70,050-기정71,280 = 경정감 △1,230	p 97
"	기획 관리	예산운영 (인건비)	5,317,951		8,000	5,325,951	구분청 직원 봉급 경정 5,317,951-기정 5,324,530 = 경정감 △6,579에서 ⇒경정 5,325,951-기정5,324,530 = 추가증 1,421	p186
			759,570		12,200	771,770	구분청 직원 정액수당 경정 759,570-기정 794,042 = 경정감 △34,472에서 ⇒경정 771,770-기정794,042 = 경정감 △22,272	p186
			9,685		10,900	20,585	민방위재난관리과시간외근무수당 당초본예산 9,685에서 ⇒ 경정 20,585-기정 9,685 = 추가증 10,900	p187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 의회 운영	의사운영 (시설비 등)	-		5,020	5,020	의회방송 시설 교체 시설비 방송장비 수선 등 = 5,020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답변서

1. 질문사항

질문의원	질문분야	질의내용
김 인	가정복지(세입분야)	○ 가정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시설별 내역은?
이 해 수	가정복지(세출분야)	○ 가정복지시설등 지원에 대한 내역은?

2. 답변 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시설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계	국비	시비
계	1,771,468	1,064,257	707,211
아동시설	299,375	215,820	83,555
노인시설	352,425	207,728	144,697
모자보호시설	76,498	61,198	15,300
보육시설	1,043,170	579,511	463,659

☐ 가정복지시설등 지원에 대한 세출내역(=7,900천원)

- 무의탁 노인 : 7,250원 × 400세대 = 2,900,000
- 사회복지시설 : 300,000원 × 5개소 = 1,500,000
- 소년가장세대 : 20,000원 × 63세대 = 1,260,000
- 중증장애인 : 20,000원 × 112세대 = 2,240,000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답변서

정신요양시설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사회복지과)

■ 운영비 경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경 정 액	기 정 액	추 가 증	비 고
계	732,332	689,421	42,911	
국 비	565,312	551,537	13,775	
시 비	167,020	137,884	29,136	

※예산서상의 국비경정액(703,196천원) 및 기정액(689,421)은 국.시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것임.

○ 종사자의 가족수당 대상자 증원 (46명→58명으로 12명 증원)

- 15,000원(1인당지급액) x 12명 x 12월 = 2,160,000

○ 종사자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

종 사 자	인원	월급여액 (예산기준)	1인당월평균 지급액(기본급)	차 액 내 역
시 설 장	3	760,000	900,000	140,000원x3명x12월 = 5,040,000
보 조 원	23	472,000	500,000	28,000원x23명x12월 = 7,728,000
간 호 사	11	543,000	650,000	107,000원x11명x12월 = 14,124,000
취 사 원	3	391,000	450,000	59,000원x3명x12월 = 2,124,000
총 무	3	678,000	770,000	92,000원x3명x12월 = 3,312,000
계	43			32,328,000

○ 종사자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 8,423,000원

- 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등